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2. 조치(경영유의) 요구일 : 2025. 1.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ETF 업무절차 개선 필요

① 합성ETF의 스왑계약 관련 스왑스프레드 및 담보 적정성 점검절차 미흡

합성ETF는 실물ETF와 달리 스왑계약(장외파생상품)을 통해 기초지수를 추종하므로, 스왑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왑계약의 스왑스프레드*는 운용사가 수취하는 보수 보다 합성ETF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스왑스프레드가 적정하게 산출될 필요가 있다.

* 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제공받는 ETF지수의 수익률 외에 추가적으로 주고받는 금액을 의미 (자금조달비용, 헤지비용 등 시장상황에 따라 +, - 변경)

** 보수 변경폭은 약 5bp인 반면, 스왑스프레드의 변동폭은 약 30bp 수준

그러나, 회사는 합성ETF 스왑계약의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피담보채권=담보물)받는 등 합성 ETF의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왑스프레드 산출시에도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나 품의절차 없이 운용역이 스왑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향후에는 합성ETF의 스왑계약 관련 스왑스프레드 및 담보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ETF 주식대차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ETF가 보유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할 경우, 차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는 주로 증권으로서 매일 가격이 변동하므로 일일정산을 통해 담보가격의 변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식대차업무를 개별ETF의 운용역이 아닌 대차전담직원이 일괄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ETF로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투자자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대차시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음에도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등 담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국내주식 대차시에는 예탁결제원 담보관리 서비스를 통해 일일정산 실시중

회사는 주식대차 업무를 개별ETF의 운용역이 아닌 대차전담직원(1~2명)이 수행하게 하면서도 ETF간 대차거래 배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향후에는 ETF가 보유하는 주식대차 관련 배분기준 및 해외주식 대차시 담보관리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③ ETF 설정 관련 절차 개선 필요

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에는 ETF 설정청구시 컷오프시간(12시, 16시 등) 이후 청구는 익일청구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는 컷오프시간 이후 설정청구된 건도 실무상 당일청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향후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ETF 설정청구 컷오프시간(12시, 16시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거나, 실무에 맞게 투자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일관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펀드 업무절차 개선 필요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금융투자업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는 사모 부동산·대체펀드 설정 시 매입·매각보수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절차 및 이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고, 보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그 대상이나 범위, 전결권자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향후에는 사모 부동산·대체펀드의 보수 등 적정성에 대한 심의부서 및 각 부서의 역할 및 보수 감면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내규화 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실제 매입·매각보수 등이 계약에 따라 적절히 부과되었는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